

간호학과 실험실습비 운영지침

제정 : 2012.09.01

개정 : 2019.07.10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 (목적) 간호학과(이하 “학과” 라 한다.)의 실험실습교과 교육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실험실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제2조(정의) 실험실습비의 구성과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실습실운영비 : 학과 실습실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
2. 임상실습 운영비 : 임상실습에 소요되는 운영비
3. 실습교과운영비 : 실습교과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

제3조 (운영내용) 실험실습비의 운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실습실운영비<개정:2019.07.10.>
 - 가. 실습기자재(실습실 비품 포함) 구입비 및 수리비
 - 나. 실습교육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(실습소모품 구입비)
 - 다. 실습실 물품 관리비(세탁비, 오물처리비 등)
2. 임상실습운영비
 - 가. 실습 교과자료(실습지침서 등) 제작비
 - 나. 실습비 : 실습기관의 학생 실습 소요 경비로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실습비
 - 다. 실습기관 및 지도자와의 협의회, 평가회 및 워크숍 비용
 - 라. 실습지도비 : 임상실습강사, 현장지도자 수당 <신설 2019.07.10.>
 - 마. 실습지도출장비 :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<개정 2019.07.10., 2023.10.16>
 - 바. 교통비 <신설 2019.07.10.>
3. 실습교과운영비
 - 가. 학생 현장실습 및 산업체 견학비
 - 나. 학생 실습관련 전시회, 발표회, 공연 등의 각종 행사 보조비
 - 다. 기타 : 학생 보험료 등 실험실습 교과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4. 위 호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예산은 대학과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집행절차) ① 학과장은 매학기 운영계획서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

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실험실습비 예산은 실습교과목별로 집행하되 학과장은 집행 건 발생 시 협조문(기자재구입신청서, 물품청구서 등)을 작성하여 대학 담당부서로 제출한다.

③ 실험실습비는 1학기는 8월 말까지, 2학기는 다음해 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한다.

제5조 (실습기자재 및 물품관리) ① 구입한 실습기자재나 물품에 대해 담당교수가 검수·확인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>

②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자재와 시설은 개인이 전용할 수 없으며 학과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학과는 실험실습비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작성, 재물조사 및 감사 등에 대비하여 집행 공문 사본과 실험실습비 지출에 관계되는 집행내역 서류의 사본을 증빙으로 보관한다.

제6조 (실습소모품 관리) ① 학과에서는 소모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학기별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실험실습비를 적기에 집행하여 매학기 개강 전에 실험실습소모품이 구입되어 실험실습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